



대신대학교

연구윤리 가이드북

연구윤리란 무엇인가
 연구 검증
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진실성 확립



학문·경건·사랑
대신대학교
 DAESHIN UNIVERSITY

연구윤리란 무엇인가?

1. 연구윤리의 정의

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알고 실천해야 할 가치나 규범.

2. 연구 진실성

연구의 전 과정(제안, 계획, 수행, 보도, 검토, 확산 등)에서 연구의 핵심가치인

① 객관성 ② 정직성 ③ 개방성 ④ 공정성 ⑤ 책무성 ⑥ 관리 등을 지켜 나가는 것을 의미함.



3. 연구 부정행위

정의: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위조·변조·표절, 대필, 부당한 저자 표기, 부당한 중복게재,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,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으로 규정.

4. 책임있는 연구수행

- 연구진실성을 추구하면서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.
-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연구공동체가 합의한 규범과 윤리적 원칙들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것.
- 연구가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를(객관성, 정직성, 개방성, 공정성, 책무성, 관리 등)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.

5. 바람직한 연구 문화 조성

1)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

연구자의 책임과 의무: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, 모든 연구수행 과정에서 ① 전문성 ② 안정성 ③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함.

2) 바람직한 연구공동체

- **연구공동체:**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개인 또는 단체들의 모임으로서, 연구자, 연구기관, 연구지원기관, 학술단체 등을 포함함.
- **기능:**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주제의 타당성, 연구과정의 오류 판단, 연구 결과의 적절한 해석 등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.
- **교수와 학생의 관계:** 연구자 사이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공동체가 연구실 안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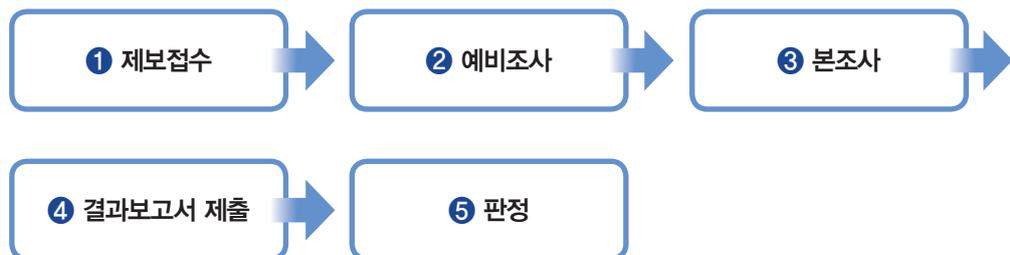


1. 연구부정 의심행위 제보

- **연구자의 책임:** 연구공동체 전체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신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, 타인의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해서도 연구공동체에 문제를 제기할 윤리적 의무가 있음.
- **제보자:** 연구부정 의심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실 및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, 교육부, 전문기관에 알리는 사람을 가리킴.
※ 연구부정 의심행위를 목격했을 때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제보해야함.
(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,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야 함.)
- **제보내용:**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구체적인 위반내용(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저자표기, 부당한 중복게재 등)과 그 증거로 이루어짐.
- **제보방법:** 소속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(또는 산학협력단, 연구처, 감사실 등)에 구술, 서면, 전화, 전화우편 등을 통해 실명으로 제보
※ 익명제보 할 때는 연구과제명, 논문명,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면 됨.
- **제보자의 권리:** 제보자는 의견진술, 이익제기, 변론 등의 기회와 권리는 물론 익명성을 보장받음.
- **피조사자:** 연구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적극적·소극적으로 가담한 자, 해당 연구에 참여자 또는 논문 저자로 등록된 자,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한 자, 연구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의심되는 자 등을 가리킴.

2.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

- 연구부정행위 검증, 어떻게 진행될까?



1. 이해상충의 유형 및 해결방안

1) **이해상충**: 연구자, 연구기관, 연구지원기관 사이에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, 이해관계 유형에 맞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.

2) **재정적 이해상충**: 연구자가 소속기관 이외의 조직 또는 단체로부터 급여, 대가(사례금, 건설팅비), 선물, 여행비, 주식(스톡옵션 포함),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.

해결방안: 연구자가 연구의 객관성, 공정성, 정직성 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속 기관의 규칙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, 필요에 따라서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특정 연구자를 연구에서 배제하여야 함.

3) **인적 이해상충**: 연구의 기회 및 자원(연구비, 연구시간, 연구장비 등), 연구업적 등의 분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. (예: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연구진에 포함시킴.)

해결방안: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구자를 연구에서 배제 또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공개.

4) **학문적 이해상충**: 연구자의 학문적 성향에 따라 연구를 편향적으로 수행하거나 편향적인 연구결과를 작성, 발표할 경우. (예: 특정 학파의 이론에 부합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행위.)

해결방안: 특정 학파에 편향된 연구자는 논문 심사에서 배제해야 함.

5) **임상적 이해상충**: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인간대상자의 안전과 연구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. (예: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인간대상자 실험결과를 위변조함.)

해결방안: 인간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.

6) **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**: 연구자가 여러 역할들(교육, 연구, 외부활동 등)을 수행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경우. (예: 대학교수가 외부 연구나 외부 강연을 중시하여 소속 대학에서의 교육 업무에 소홀한 경우.)

해결방안: 연구자의 1차적 소속기관을 명확히 하고, 본연의 역할에 우선 충실하도록 해야 함.

2. 이해상충의 유형 및 사례

1) 재정적 이해상충

- 연구자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로부터 이득을 볼 기업의 임원이거나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.
- 연구자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혹은 자문위원회 활동비 등 재정적 보상을 받는 경우.
- 연구수행 중 기업으로부터 선물, 여행비, 기타,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등.

2) 인적 이해상충

-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결과의 분배(연구비 지급, 논문 저자자격 부여 등)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(‘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’).
- 연구자 소속기관, 연구비 지원기관 및 관리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경우.
- 특정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에 포함시는 경우.
- 특정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연구진에서 배제하는 경우 등.

3) 임상적 이해상충

- 최근 의과학 연구는 급속한 상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.
-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거나 연구결과를 위변조하는 경우.

4) 학문적 이해상충

- 연구자 본인이 믿고 있는 이론에 지나치게 신뢰하거나, 그 이론에 부합하도록 연구결과를 위변조하는 경우.
-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, 철학적 신념이 연구의 수행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(진화론에 대한 천성 또는 반대 입장의 편향성, 낙태, 생명 등에 관한 신념이 줄기세포, 배아, 유전자 조작 등 관련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).
- 타인의 논문이나 연구계획 등을 심사하면서, 심사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신념이나 이해를 근거로 판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아닌 개인의 주관에 따라 비이상적인 심사를 수행함.

5)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

- 교수나 연구원이 일차적 직무(연구와 교육) 이 외에 많은 시간을 외부활동(기업, 사회단체 자문 등)에 씀으로 인해 소속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하는 경우.
-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의 사업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.
- 교수가 행정실, 연구실에 소속된 직원, 연구원, 대학원생 등을 개인적인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.
-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나 자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연구원에게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 등.



대신대학교
연구윤리
가이드북

38649)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(백천동 137번지)
(전화) 053-810-0701~3 (팩스) 053-813-0006